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8
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8. 7. 11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개정이유

-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 관람자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고 관람권에 모금내역 및 모금액을 표시토록하며
- 관람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

■ 주요골자

-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1조의 2)
 - 관람료 징수일지 비치, 일일결산, 별지 서식신설
- 별표 1 [관람료]를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함
 - 어 른 : 개인 500원을 550원으로, 단체 400원을 440으로 함
 - 청소년 및 군인 : 개인 250원을 270원으로, 단체 200원을 220원으로 함
- 관람료와 관람권 영수증에 문예진흥기금 모금 사항을 기재함

■ 참고법령

-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방위병”을 “공익근무요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 2 (관람료의 징수) 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관람권출납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일일수불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일지를 비치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금액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제17조(준용)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별표1 [관람료]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금 액		비 고
	개 인	단 체(20인이상)	
어 른	550원	440원	25세 - 64세
청소년 및 군인	270원	220원	13세 - 24세 및 하사이하의 군인

※ 문예진흥기금 10% 포함

별지제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

(앞면)

<p>관람권</p> <p>일련 번호:</p> <p>거창박물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구분: 원</p> <p>(문예진흥기금00원포함)</p> </div> <p>거창군수</p>	<p>관람권 및 영수증</p> <p>일련 번호:</p> <p>거창박물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구분: 원</p> <p>(문예진흥기금00원포함)</p> </div> <p>거창군수</p>	<p>박물관 전경</p>
---	---	---------------

(이 관람료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예진흥기금 포함된 것임)

(뒷면)

<p>(공란)</p>	<p>박물관 소개</p>	<p>관람 안내</p>
	<p>연혁 및 유물현황등</p>	<p>관람시간 :</p> <p>휴관일 :</p>
		<p>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를 소중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.</p> <p>※ 전시실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함</p>

(별지 제2호 서식)

관람권출납부

(단위 : 권)

결재			월일	적요	단위	수	불	잔	비고
실장	관장	계							

(별지 제3호 서식)

관람권일일수불부

(단위 : 매)

결재			월일	수불내역					비고		
실장	관장	계		구분	이월	수	불	잔			
				개인	어른						
					청소년 및군인						
				단체	어른						
					청소년 및군인						

(별지 제4호 서식)

관 랑 료 징 수 일 지

구 분			당 일			누 계	
			인 원	관 랑 료	금 액	인 원	금 액
유 료	어 른	개 인					
		단 체					
	청 소 년 군 인	개 인					
		단 체					
	소 계						
무 료	어 린 이						
	노 인						
	기 타						
	소 계						
합 계							

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징수책임자 (인)

계	관 장	실 장	부군수	군 수

신.구 조 문 대 비 표

=====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 1~2 : (생략) 3. 군인 :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(전투경찰, 순경, 경비 교도 및 <u>방위병</u>을 포함한 다. 이하같다.) 4~6 :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~2 : (현행과 같음) 3. 군인 : ----- ----- -- <u>공익근무요원</u>----- -- 4~6 :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제11조의 2(관람료 징수) 관장은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출납부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일일수불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람료 징 수일지를 비치하고 결산을 하여야 하 며 일일징수금액은 다음날까지 거창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신설></p>	<p><u>제17조(준용)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 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
<p><u>제17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18조(시행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</p>